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8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주철현 · 어기구 · 김성범
허영 · 황운하 · 윤준병
송옥주 · 조계원 · 이재관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난 6월 10일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 혁신 위원회’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혁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

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및 부칙 제2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중 “총회에서”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과 임기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같은 해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u>총회에서</u> 선출하되, 회 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 다. ② ~ ⑦ (생 략)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 <u>회원인 조합의 조합원</u> <u>이 투표로 직접</u> ----- -----. ② ~ ⑦ (현행과 같음)